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현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제9조제6항은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에만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 결격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적임자로 판단된 임용 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차상위 적임자 외 후순위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외공관 인사 운영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임용 결격사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적임자가 지원을 철회하거나 직무 수행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가 부여한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위원의 비중이 높아 민간 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바,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 수를 조정하여 민간위원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최적임자 임용 결격사유 명확화 및 후순위자 임용 근거 마련(제9조제6항)

- 선발심사위원회서 최적임자로 판단된 후보자가 임용자격요건 미달임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선발심사위원회가 부여한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려는 경우 위원회의견 사전청취 절차 도입

나. 제9조제6항 개정에 따른 선발절차 재진행 사유 정비(제9조제4항)

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제5조, 제7조)

- 민간위원수를 '3명'에서 '3명 이상'으로, 외무공무원 위원수를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수를 '(부처별) 각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각각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을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3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명”을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를 “기획예산처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로, “각 1명”을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민간위원 3명”을 “민간위원”으로, “중에서, 나머지”를 “중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따른 7명의”를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2호 본문 중 “최적임자(제5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임용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5항에 따라 최적임자”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면접심사 결과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
2.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주재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9조에 따른 공모에 따라 진행 중인 주재관 선발 절차로서 아직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u>	<u>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u>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사람</u>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선발심사에서 직무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대상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1. 선발대상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u>3명</u>	1. ----- ----- ----- ----- <u>3명 이상</u>
2.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u>1명</u>	2. ----- ----- <u>1명 이상</u>
3. <u>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u> 소속의 고위공무원	3. <u>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u> -----

단에 속하는 공무원 <u>각 1명</u>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u>민간위원 3명</u> 중 2명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u>중에서</u>, <u>나머지</u>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 ⑧ (생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u>따른 7명의</u> 위원 중 4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 ~ ⑤ (생략)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① ~ ③ (생략)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1. (생략) 2. <u>최적임자(제5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임용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u>로 판단된	----- <u>1명 이상</u> ⑤ ----- <u>민간위원</u> ----- ----- ----- ----- <u>중에서</u>,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따른</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u>제5항에 따라 최적임자</u>----- ----- ----- -----
---	--

주재관 임용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제6항에 따라 차상위 적임자로 판단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생략)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가 질병, 사고 등 재외공관 근무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지원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면접심사 결과 차상위 적임자로 판단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다만, 제6항에 따라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면접심사 결과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
2.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주재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기에 부적합하

⑦ (생략)	<u>다 고 인정되는 경우</u>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인사기획관	
연 락 처	(02) 2100 - 7152